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물류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1.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8.3.22.일부로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동법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에 의거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한 차량의 소유자는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단말장치 장착은 물류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별도 고시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험물질의 종류, 최대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 2018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

4. 아울러 소방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회 등 관련 기관에 동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류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제2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5.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 구간(이하 "통행제한 구간"이라 한다)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

6.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하는 자(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

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임직원과 제5항에 따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는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①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 및 점검·관리 방법 등 단말장치의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 및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위험물질 운송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위

험물질 운송차량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또는 관련 사업장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의3(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 중 "제40조에"를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 제40조에"로 한다.

제71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73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8.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험물질의 종류, 최대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 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8712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그 운영계획서를 직전 연도 1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내역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연도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2018년도 운영계획서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지체없이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 | | |

| | | | | |
|--|-----------------|--|-------|-------|
| 가. 법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법 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법 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법 제73조 제1항제1호 | 150만원 | | |
| 나. 법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다. 법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관리하지 않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6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라. 법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7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마. 법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8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바.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 | |
| 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1호의2 | 30만원 3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5천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 | |
| 아. 법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2호 | 30만원 3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5천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 | |
| 자. 법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경우 | 법 제73조 제1항제4호 | 200만원 | | |

국토교통부령 제497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3.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4.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5.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 및 점검·관리 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단말장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해당 운송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수집되도록 할 것
 3.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할 것
-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점검한 결과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단말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장치의 장착·기술 기준 및 점검·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1.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2. 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3. 운송시작시간,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단말장치 장착·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위험물질운송단속원증)

사 진

3cm×4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 [백상지 12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소속/직급:

성 명:

생년 월일:

위 사람은 「물류정책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
른 조사공무원(위험물질운송단속원)임을 증명합니
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
다.
2. 이 증표를 휴대한 사람은 위험물질운송차량 또는 위험
물질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
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
시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단말장치 장착·개선명령서

| | |
|-----------|---------|
| 소유자 | 성명(상호) |
| | 주소(사업장) |
| 자동차 등록번호 | |
| 위반내용 | |
| 개선사항 | |
| 이행사실 통보기한 | |
| 년 | 월 |
| 일까지 |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합니다.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을 완료하고, 단말장치 장착·개선명령 이행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운행중지명령서

| | |
|-----|---------|
| 소유자 | 성명(상호) |
| | 주소(사업장) |

자동차 등록번호

위반 내용

위 자동차에 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7에 따라 운행중지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의사항

○ 위 운행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